



경기도시공사

동탄2신도시 이주자택지 제반사항 안내



□ 주요세금 안내

○ 취득세 ⇒ **납부일(계약금포함)로부터 60일 이내에 자진 신고·납부**

- 대금납부기간이 2년 이상이므로 지방세법에 의거 **연부취득에 해당되어 토지대금(계약금 포함) 납부시마다 매회 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 신고·납부하여야 함(신고 및 납부처 : 화성시 동부출장소)**

○ 지방세 비과세 안내 (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규정)

- 현지인으로서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(이주자택지는 **잔금지급일**, 잔금지급일에 토지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**토지사용가능일**)로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에는 지방세 비과세됨
(단, 대체취득 부동산가액이 종전 부동산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비과세 제외)
- 비과세를 위한 필요서류
 - ① 공사와 계약한 분양계약서
 - ② 토지대금 납부확인서(납부 후 3주 내 우편발송, 주소변경시 사전연락 요망)
 - ③ 토지수용확인서(원본) - 우리공사 보상1팀에서 발급 (031-220-3104)

□ 명의변경 안내 ('13.10.7 이후부터 가능, 경기도시공사 본사 판매총괄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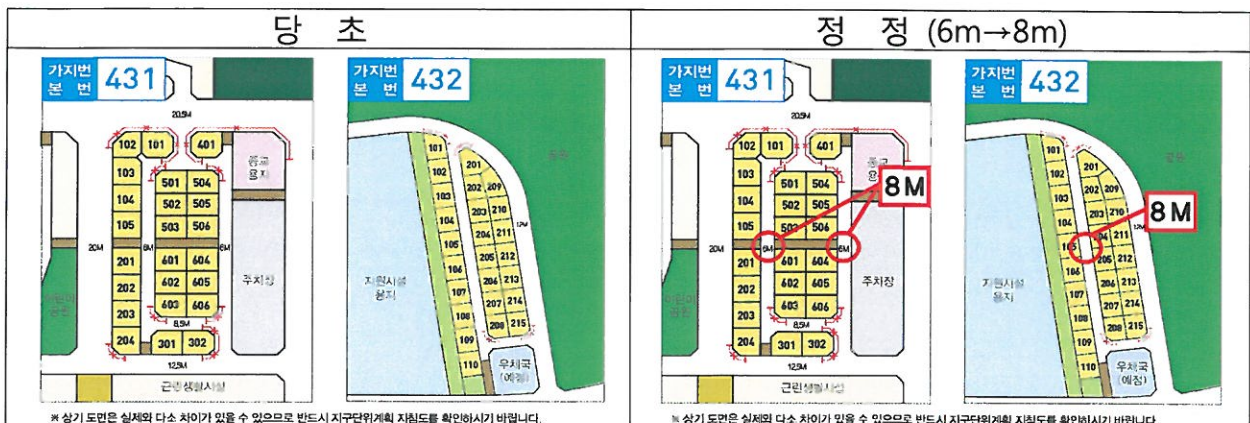
○ 구비서류

- ① 용지매매계약서(화성시 동부출장소 검인)
- ② (매도인-매수인 간의) 매매계약서(화성시 동부출장소 검인 필요)
- ③ 매도인 서류
신분증, 인감도장,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(매수자 인적사항 기재), 주민등록등본
- ④ 매수인 서류
신분증, 인감도장, 인감증명서, 주민등록등본
- ⑤ 대리인 방문시 **추가** 필요서류
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("본인" 인감날인), "본인" 인감증명서(1부 추가)

※ 쌍방 대리 불가, 연체 시에는 명의변경 불가

※ 주민등록등본, 인감증명서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

□ "이주자택지 공급안내 책자" (37페이지) 정정 안내



□ 경기도시공사 찾아오시는 길

○ 주소 :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(권선동 1246)



○ 이주자택지 관련 담당부서

담당부서	관련업무	전화번호
판매총괄팀	계약, 명의변경, 입금확인 등	220 - 3552
동탄계획팀	지구단위계획 확인	220 - 3182
보상총괄팀	토지수용확인서 발급, 이주대책 보상 관련	220 - 3104
	생활대책 보상 관련	220 - 3107